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가합501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인  
담당변호사 김배년, 양성은, 정광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3. 2. 4.부터, 피고 C는 2023. 2.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C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변론기일을 통지받고도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류하나, 판사 송귀연

별지